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조경태·김도읍·배준영

박성민 • 백종헌 • 김성원

이헌승 • 곽규택 • 조정훈

이인선 • 윤영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.

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 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8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한다)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을 말한다)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, 그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1주택에 상시거주 (취득일 이후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상시거주"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상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의2를 적용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주 주택의 판정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4조의2(재개발・재건축 사업
	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
	재산세 과세특례) ①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
	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「도시
	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
	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
	2개의 주택(「도시 및 주거환
	경정비법」 제86조에 따른 이
	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
	받은 주택을 말한다) 외에 다
	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,
	그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1
	주택에 상시거주(취득일 이후
	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
	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
	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
	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
	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
	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상시거
	주"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상
	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
	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

<u>것으로 보아 「지방세법」 제1</u> 11조의2를 적용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야 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 주 주택의 판정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